발 간 등 록 번 호
전북교육 2022-064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

2022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가는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http://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목 차

Ⅰ 전라북도 교육 기본 방향 ····· 1

Ⅱ 전라북도 특수교육의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 2

Ⅲ 전라북도 특수교육 현황 ····· 3

Ⅳ 2021 전라북도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 5

Ⅴ 2022 전라북도 특수교육 핵심 과제 ····· 10

1장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 11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 11

1-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5

1-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7

1-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24

1-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 27

1-6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29

1-7 장애학생 안전 강화 ····· 31

2장 통합교육 환경 조성 ····· 33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33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35

2-3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36

2-4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 확대 ····· 38

2-5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 40

3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42
3-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42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44
4장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 50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50
4-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 64
4-3 장애 공감 문화 조성강화 ····· 66
4-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68
4-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 71
4-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74
5장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75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75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77
5-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78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 79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 81
5-6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지원 ····· 84

Ⅵ 2022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 사항 ···· 87

Ⅰ. 전북교육 기본 방향

교육 비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 지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
주요 정책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Ⅱ.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

목표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Ⅲ. 전라북도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팀 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기타	계
특수교육	1	2 (초등1, 중등 1)	1		4
특수교육지원센터	(겸임)	2 (초등1, 중등 1)	1	교사 3, 특수행정실무사 1	7

□ 2022년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8개소(전북교육청 1, 교육지원청 17)

□ 2022년 특수학교(급) 전체 현황

[단위: 학급, 2022.1.행정과 자료 제공]

구분	영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급	0	0	58	204	266	1,101	93	420	60	323	0	0	477	2,048
특수학교	1	1	16	51	73	340	46	238	51	269	28	222	215	1,121
계	1	1	74	255	339	1,441	139	658	111	592	28	222	692	3,169

○ 특수학교(급) 학생 수 현황(2020년~2022년)

[기준:명, 매년 4.1.특수교육통계]

연도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0	189	1,275	560	655	213	2,892
2021	240	1,368	616	629	200	3,053
2022	256	1,441	658	592	222	3,169

※ 2022년 기준은 2022.1.행정과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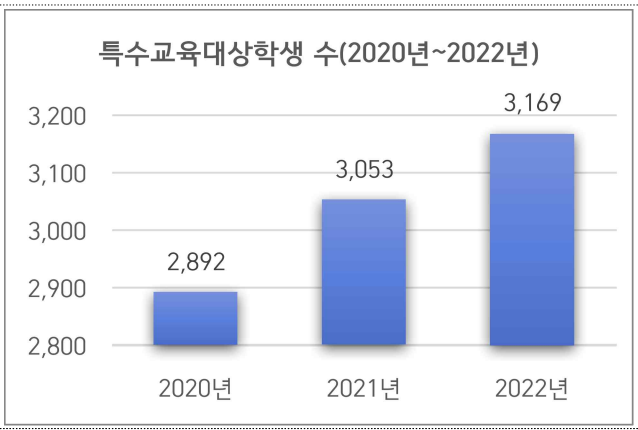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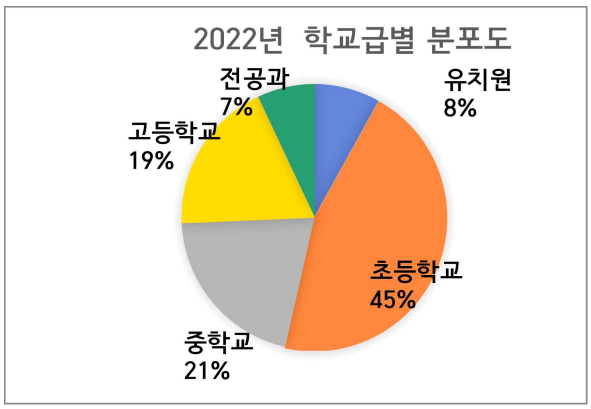

❍ 2022년 특수학급 세부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 분		2022학년도(B)			비고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일반학교 (특수학급)	유치원	36	58	204	
	초등학교	240	266	1,101	
	중학교	75	93	420	
	고등학교	43	60	323	
	소계	**394**	**477**	**2,048**	

※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학생,과 국립학교 배치학생이 미포함임

❍ 2022년 특수학교 세부 현황

[단위: 학급, 2022.1.행정과 자료 제공]

구분	학교명	영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비고 (학생 수)
공립	전주유화학교	1	12					13	42
	전주은화학교			9	5	8	4	26	143
	전주선화학교		1	9	4	5	6	25	149
	군산명화학교		1	12	7	9	4	33	181
	다솜학교			6	4	5	2	17	80
	한울학교			6	3	5	2	16	68
공립 소계		**1**	**14**	**42**	**23**	**32**	**18**	**130**	**663**
사립	동암차돌학교			8	7	6	2	23	124
	전북맹아학교		1	6	5	3	4	19	96
	전북혜화학교		1	8	6	4	2	21	120
	전북푸른학교			9	5	6	2	22	118
사립 소계		**0**	**2**	**31**	**23**	**19**	**10**	**85**	**458**
전체 계		**1**	**16**	**73**	**46**	**51**	**28**	**215**	**1,121**

Ⅳ. 2021년 전라북도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 추진과제 1.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명	사업 실적	22년 운영 중점
특수교육 기관 확충	○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총 20학급 신·증설) - 일반학교 특수학급 24학급 신증설 - 특수학교 특수학급 4학급 감축 ○ 군산명화학교 6학급 신축 ○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급 환경 개선: 23학급 - 무장애 통합놀이 공간 구축: 13개교	○ 교재교구 지원(70개 학급) - 신증설 교실환경 지원(30학급, 600,000천원) - 노후환경 개선 지원 (40개학급, 400,000천원)) ○ 동부권특수학교 신축 관련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실행: 1월, 1회 ○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격) ○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 연중 - 행복동행 권역별(13팀) 컨설팅 59회 - 신규 교사 학교급별 연수: 2회(36명) - 특수교육지원단 워크숍: 1회 ○ 특수교육지도사 역량강화 원격연수-64시간 - 1박 2일 워크숍 1회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서 배부 ○ 신규교사 학교급별 연수 지속 운영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 영역별 전문교사 선정 및 지속적이고 내실화된 연수 필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 특수학교(급) 등교수업 원칙과 방역계획, 기숙사 관리 등 학사운영 안내 ○ 특수학급 자율선택과제 (47학급, 75,000천원)	○ 특수교육교육과정 내용 추가(원격수업, 중도 중복장애) ○지속적인 방역관리 및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마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도교육청 지침 마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거점 운영: 7기관 - 전주, 군산, 익산,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 익산맑은샘유치원, 남원노암초병설, 전주효천초병설 ○ 유치원 통합교육 이해를 위한 원장 연수: 1회	○ 유치원 특수학급 수요증가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 강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온라인 대회 2회 운영 -전북대회 : 6.14.~25., 38개교 313명 참여 -전국대회 : 9.6.~9.8./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2, 페어플레이상 2명 수상 ○ 문화예술거점기관 운영: 14기관(특수학교 10, 지역 4)	○ 장애학생IT-페스티벌 온라인 대회 활성화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발표 기회 제공
장애학생 안전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 매뉴얼 제작	

□ 추진과제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사업명	사업 실적	22년 운영 중점
통합교육 지원체제 및 통합교육역량 강화	○ 통합교육 중점 정다운 학교(7기관)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 기관(7기관) ○ 통합교육지원실 설치(7개교) ○ 통합학급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100학급)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지원(5개 교육지원청) ○ 통합교육지원단 조직(14개 교육지원청) ○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물품지원: 타임타이머 206개	○ 통합학급 담임(담당)교사 연수 기회 확대 필요 ○ 통합교육지원단 역할 확대
순회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순회교육(교사 87명) - 교사 2~4명 학생 지원(학생당 주 2~6시간 운영) ○ 순회교육 운영 길라잡이 배부	○ 시설 및 가정 재택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강화 ○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확대	○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팀 운영(10개교) ○ 특수학교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10개팀) ○ 일반학교 행동중재, 자율선택과제 지원(17개 학급) ○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20명 ○ 장애학생 행동중재 거점센터 구축(1개소, 익산)	○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 확대 ○ 장애학생행동중재 연수 ○ 장애학생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내실화 ○ 의료적 지원 방안 모색
특수교육보조공학 지원체계 강화	○ 일반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 유형별(시각·청각·지체) 지원: 거점센터 중심 지원 ▸ 지역별 지원: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10개교) ○ 시각장애 학생 대체 교과서 보급(확대 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파일 제공) 7명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지원 체계 강화 ○ 각기관별 보조공학 활용 내실화
각급 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철저	○ 법적 의무시설(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총 160교 지원) - 강당·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56교) -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92교) - 승강기 증축(12교)	○ 2022년 장애인 등 편의 시설 설치 지속 추진 - '19년 95% ⇒'20년 95.6% ⇒'21년 96.4%

□ 추진과제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명	사업 실적	22년 운영 중점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시행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 9교, 104,000천원 - 2021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성과공유회 실시(1회, 47명) - 호남권 자유학기(년)제 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 2021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참여(9교)	○ 2022 호남권 선도교육청 (광주) ○ 특별교부금지원사업에서 시도별 자체 사업비로 편성 운영 전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특성화 지원 - 직업교육 중점학교: 1교(전북푸른) -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교육 활성화: 1교 -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 1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지역사회 연계 : 4개 지원청 - 전문직업교육기관 연계 직업 위탁교육: 4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선화체험관): 1교 - 직업교육 거점학교: 3교(이리고, 전주생명과학고, 전북유니텍고) -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8교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 지원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7교(23명) -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4교 -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90명 - 학습중심 현장실습(정부주도형): 152명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34개교, 428명 ○ 특수교육 진로직업 교사 연수: 2회, 64명 ○ 직업중점, 거점학교, 진로전담교사 등 성과 나눔: 3회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원 : 3교, 3명(사립) ○ 전북교육청과 직업 관계기관 간 협의회: 7회 ○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8개 종목(4교, 8명) 대회장상 수상('22년 12월)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 (호남권역)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참가(13교, 58명) - (단위학교 자체계획)장애학생 진로탐색 및 대학생활 체험 운영(8교, 396명)	○ 사립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예정('22.3.1.자 1명) ○ 직업 관계기관과 연계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확대 ○ 나이스 취업 지원서비스 시스템 전면 시행('22년 3월) ○ (취업률 제고)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강화 지원(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속적 지원(30명)
	○ 특수행정실무사 운영(55명: 학교 29명, 교육행정기관 26명) - 특수행정실무 배치기관(5명) 현장 모니터링('22년 4월) - 인력지원으로 고용률 향상 지원, 장애인식개선 효과 증대	○ 의무고용률 향상을 통한 고용 분담금 감소, 행정과 고용의무고용률 달성 (3.41%)에 적극 협조 (기준 3.4%) ○ '22년 65명 운영 예정

□ 추진과제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명	사업 실적	22년 운영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충(정교교사 30명 증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연수, ○ 문화예술, 가족지원 등 영역별 모니터링 회의 ○ 장애 학생 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14센터) ○ 장애 유형별 거점센터 운영(4기관, 전주, 군산, 익산, 전북맹아) ○ 장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연구(전북교육연구정보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지원 강화(연수 시기 2~3월) ○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강화
범국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2,229명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이수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모든 학교 학생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행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 ○ 모든 학교 교직원 (연 1회),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15개단) ○ 장애학생 인권교육, 성교육등 실시 ○ 인권피해 실태조사 실시	○ 인권지원단 위원 연수와 지역 담당자 정보공유의 장 (분기별) 운영 ○ 특별사안 발생 시 지원 프로그램 발굴 필요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구축	○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대면 심사 8회, 서면 심사 5회 - 2022학년도 고등학교 배치 추진 : 249명 - 초등 취학유예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입학 안내 - 초등 취학유예 승인에 대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신중한 판단과 심사 필요(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내용 공유) ○ 202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매뉴얼 제작(500권, 4,000천원)	○사례별 선정배치 및 재배치 다양한 사례 공유 ○특수교육운영위원의 역할 연수 강화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 강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학부모 동아리, 가족 캠프 운영(14청) ○ 지역별 학부모 연수와 회의 운영: 3회 ○ 방과 후 마을 학교(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연수 1회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연수와 동아리 운영지원 ○ 양육 방법과 관계기관 정보공유

□ 추진과제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사업명	사업 실적	22년 운영 중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 운영(월 12만원)** - 지원영역: 물리, 작업, 언어, 청능, 보행, 기타 등 (6개 영역) - 지원현황: 전자카드 2,994명, 예산교부 6명 - 지원총액: 4,319,880천원 ○ 치료지원 업무 길라잡이 배부 활용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치료지원 전자카드 내역에 대해 2단계(지역 센터→사업부서) 중점 관리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원거리 통학생, 중증장애 학생과 동행 학부모 1,045명 ○ 방과후, 통학비 업무 길라잡이 배부 활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 방과후 교육활동 희망자 2,617명 - 프로그램당 월 60만원 또는 1인당 10만원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기관 및 운영 내실화 강화
	○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특수교육지도사 : 393명 (공립 332명, 사립 61명) · 원격 직무연수 1회, 1박 2일 워크숍 1회 - 사회복무요원 : 94명 (공립 81명, 사립 13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연수 강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지원	○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 교육비 지원: 1인 기준 361,000원, 75명 - 유치원 방과후 과정 : 54급 운영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원격수업 지원 - 4기관, 105명/ 238,050천원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의 방역물품 지원 (105명, 체온계 전달) ○ 한국교육개발원 초등과정 인력 배치: 특수교사 1명 ○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건강장애 담임(담당)교사 연수(4권역별 운영) ○병원학교 운영 협력 강화 -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채용 공고 안내	○건강장애학생 지원 강화 (다양한 원격수업 참여 방법 안내와 질 관리) ○원격수업의 질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점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간 평가 과정 필요

Ⅴ. 2022 전라북도 특수교육 핵심 과제

1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신·증설 특수학교(급) 지원 및 노후 환경 개선 지원
- 특수학교(급) 자율선택과제 운영 확대

2 통합교육환경 조성

-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100개 학급)
-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14개 기관)

3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전문화 특성화 지원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자격증 취득)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유업무 수행과 역량강화 지원
- 장애학생인권지원과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 통합교육지원단운영과 장애공감문화 조성 확장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적정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운영 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강화(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1장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 추진목적 및 근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권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학급당 정원 수 준수 추진

연도	유	초	중	고	전공과	비고
2022	4	6	6	7	9	전공과는 전라북도 자체 정원임

■ 원거리 통학학생의 근거리 배치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의 과밀학급 해소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2021.12.2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중도중복학생의 범위와 개념은 추후「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교육부)

■ 연도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학급 현황

[단위: 학급]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계	비고
	유	초	중	고			
2021	15	6	2	1	△4	20	
2022	7	9	4	△2	0	18	

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 현황 감축 노력: 2021년(20학급)→2022년(18학급)

■ 2018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추진)

다. 신·증설 특수학교(급) 지원 및 노후 환경 개선 연차적 지원

■ 신·증설 특수학교(급)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지원(30개 학급 예정)

■ 노후된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연차적 지원(40개 학급)

■ 무장애통합놀이공간 구축 사업 종료(2019~2021년, 총 36개교 지원)

※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는 실사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협의절차로 추진함

라. 특성화된 특수학교 설립 노력

■ 동부권(무주·진안·장수) 지역 특수학교 개교(교육감 공약)

- 2020년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교육혁신과)
- 2022년 특수학교 신축을 위한 자체투자심사 심의(행정과, 2022.1.26.)
- 2025년 3월 1일 특수학교 개교 예정

○ 운영형태: 중·고·전공과 과정 / 장애 영역 통합
○ 운영 규모: 10학급(중 4, 고 4, 전공과 2)
○ 운영권역: 무주·진안·장수, 기타 통학 거리 가능지역

참고 [전국 다양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연면적	위치	개교(예정)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21학급 (중 9, 고 12)	138명 (중 54, 고 84)	14,588㎡	부산대 부산캠퍼스	'24. 3.
공주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18학급 (고 18)	126명	11,789㎡	공주대 옥룡캠퍼스	'24. 3.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21학급 (중 9, 고 12)	138명 (중 54, 고 84)	14,942㎡	한국교원대	'25. 3.

협조 및 유의사항

■ 거주지와 통학 거리 등 고려하여 신·증설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

■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추진 일정
- 2023학년도 수용계획 수립(11월) 이전에 실행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일 경우 유아 입학 시스템(처음학교로-www. go-firstschool.go.kr/) 등록 이전 실행

※ 유치원 유아 모집 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우선 모집 대상임

[특수학급 편성 요건(행정과 제공)]

■ 적용대상: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 신.증설 기준

구 분	기 준
신설	특수교육 학생 수가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
증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증설 후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

■ 편성 요건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제외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실 확보가 우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지정·배치 등
- 시·군을 달리한 학교 배치는 지양(필요할 경우, 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운영할 학교 중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업무계획 ♠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현황]

2022.1. 행정과 제공

구 분			2022학년도			변동 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신설 (학교명)	소계	증설 (학교명)	소계	감(폐)급 (학교명)	소계	계
일반학교		유치원	36	58	204	전주새뜰유(3), 군산가람유(3), 봉서유(1), 삼례중앙초병설유(1)	8			김제초병설유(1)	△1	7
일반학교		초등학교	240	266	1,101	전주만성초(1), 전주문학초(1), 전주인후초(1), 전주효문초(1), 군산금빛초(1), 이리마한초(1), 이리모현초(1), 진봉초(1),	8	전주신성초(1), 군산산북초(1), 이리동초(1), 남원노암초(1),	4	산내초(폐급), 성덕초(폐급), 수남초(1),	△3	9
일반학교		중학교	75	93	420	전일중(1), 전주만성중(1), 익산부천중(1), 익산어양중(1), 익산지원중(1)	5	전주화정중(1), 한들중(1)	2	삼례중(1), 무주중(폐급) 계화중(폐급)	△3	4
일반학교		고등학교	43	60	323					김제여고(1), 서림고(1)	△2	△2
일반학교		**소계**	**394**	**477**	**2,048**	**17개교**	**21**	**6개교**	**6**	**9개교**	△9	**18**
특수학교	공립	전주유화학교	1	13	42		0		0	영1	△1	△1
특수학교	공립	전주선화학교	1	25	149		0	초 1	1	고등 1	△1	0
특수학교	공립	전주은화학교	1	26	143		0	초 3	3	중 1, 고 2	△3	0
특수학교	공립	군산명화학교	1	33	181		0	초 5, 고 1	6		0	6
특수학교	공립	다솜학교	1	17	80		0		0	고 1	△1	△1
특수학교	공립	한울학교	1	16	68		0		0	고 1	△1	△1
특수학교	공립	**공립 계**	**6**	**130**	**663**	**0**	**0**	**3개교**	**10**	**5개교**	△7	**3**
특수학교	사립	동암차돌학교	1	23	124		0		0		0	0
특수학교	사립	전북맹아학교	1	19	96		0		0		0	0
특수학교	사립	전북혜화학교	1	21	120		0		0	초 1, 고 2	△3	△3
특수학교	사립	전북푸른학교	1	22	118		0	고 1	1	중 1	△1	0
특수학교	사립	**사립 계**	**4**	**85**	**458**	**0**	**0**	**1개교**	**1**	**2개교**	△4	△3
특수학교	**소계**		**10**	**215**	**1,121**		**0**	**4개교**	**11**	**7개교**	△11	**0**
총 계			**404**	**692**	**3,169**	**17개교**	**21**	**10개교**	**17**	**16개교**	△20	**18**

※ 국립학교 특수학급은 미포함

1-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강화
-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같은법시행령 제5조 (교원의 자질향상)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단 확대 운영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현장 컨설팅 활동
- 신규·저경력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 구성영역: 수업지원, 생활교육, 전환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 인적구성: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자문인력(특수학교 교감, 교장, 기타 전문가), 실무위원(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나.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조직·운영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사 연구회 조직 및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 현장중심의 현안과제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26팀 운영

순	영역	동아리 수	내 용
1	진로직업	10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동아리
2	정보예술	10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교과연계 e-콘텐츠 개발 등 교사 동아리
3	교과교육	4	장애영역별, 교과별 교실수업개선 연구 등 교사 동아리
4	정보화연구회	2	정보화대회, e-스포츠대회 운영 등 정보화 역량 연구회

다. 특수교사 연수 및 지원 실행 추진

■ 신규(저경력)교사 대상 특수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행복동행 참여 기회 확대

■ 신규(저경력)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행(연 2회)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인사 개선(부장교사 등) 방안 노력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마.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 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강화

■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 이용 방법 안내와 운영(교원인사과)

■ 특수교육 교원의 안전대책 수립 및 관련 예산 수립(학교 자체)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원단 참여 독려**

- 해당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도 능력과 소양을 갖춘 특수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
- 특수교육지원단 신청과 활동으로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협조**

1-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지역·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색 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은 20% 범위에서 시수 증감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 등)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 계획(수업 교류, 행사 교류 등) 수립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군)별 50% 범위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공포 '20.10.20., 시행 '21.4.21.)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 근거 마련

■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관련하여 특수학교(급) 학사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과 일반화 추진

■ **장애영아와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지원
- 교육과정 지침 상세화와 학교 수준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교(간) 교류를 통한 교육과정 협동 컨설팅을 통한 지원 강화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에 특수교육 운영계획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노력

■ **학년 초 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교 상황과 학생 장애 특성에 맞게 자율적 운영**

예시) 특수교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 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통합학급교사와 공유, 통학학급 교육지원 방안 협의, 상담 등

다. 특수학교(급)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자율선택과제 운영)

■ 목적

- 특수학교(급) 학생들의 일상생활, 사회적응,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동
- 특수학교(급) 학생들의 정서지원 및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정(4월 중)

■ 지원규모 : 일반학교 특수학급(50개학급, 급당 1,500천원 기준, 75,000천원)

특수학교(10개교, 교당, 6,000천원 기준, 60,000천원)

라.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기 상황 시 학습권 보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서적 위기로 인한 유예 및 면제 지양

■ 정서 문제(우울감, 감정조절 능력 저하, 공격적 행동 등)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 급증으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 2022 장애학생 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제작 자료 참고

■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또는 심리안정실 운영 활성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 방법(협력 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마.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계획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통합학급 수업 참여 범위 결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참여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 방법(협력 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 통합교육지원단을 통한 지원

바.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 강화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배치기준 준수 및 연수 이수 철저

-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중인 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 통합학급 교사 대상으로 특수교육 이해 연수

사.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통합학급 운영 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 정원 1~3명 감축 필요

아.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증진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단(국립특수교육원) 운영

-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안내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 사례 발굴·확산 및 공유

■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

-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동시 개정 추진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추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추진 일정(안)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 각론 시안 연구 개정 교육과정 고시(`22.하)	교육과정 후속지원 (평가기준 개발 등)	초등학교 적용	중고등학교 적용 시작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22.하) 교과용도서 개발 시작 (교과서, 지도서,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보급 시작	중고등학교 보급 시작

■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및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

-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 마련

(특수학교) 국립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운영 모형 개발('22. 하반기.)

(특수학급)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고교학점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22~)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 내 특수교육 관련 내용 >

- **(운영 원칙)** 특수학교의 경우 소속 학생의 장애 정도 등 학교 여건에 맞게 학점제 운영
- **(법적 근거)**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학점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완료(초·중등교육법에 고교학점제 관련 사항 신설 , '21.9.24.)
- **(학점 이수 기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과목 이수기준(과목출석률 2/3,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

<table>
<tr><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 rowspan="3">기반 마련</td><td rowspan="3">운영 체제 전환</td><td colspan="2">제도의 단계적 적용</td><td>고교학점제 전면 적용</td></tr>
<tr><td rowspan="2">1학년 192학점</td><td>1학년 192학점</td><td>1학년 192학점</td></tr>
<tr><td>2학년 192학점</td><td>2학년 192학점
3학년 192학점</td></tr>
</table>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관련하여 전북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위원회 확대 구성 및 전라북도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지침 편성 계획

- 2022 전북교육청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확대 재구성(3월)
-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관련 협의회 참석(연중)
-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사례 발표회 참여(연 2회)

■ (특수학교) 지역 여건과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30%,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 ·반영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보급 확대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자. 장애학생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작성 방법</th></tr>
<tr><td colspan="2">통합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td><td>○ 교과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함</td></tr>
<tr><td colspan="2">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는 교과</td><td>○ 교과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시 특수학급 참여 시간의 교육활동 및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td></tr>
<tr><td rowspan="2">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td><td>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 내용이 있을 경우</td><td>○ 교과담당교사는 특수교사에게 교과의 지도계획 및 평가 계획을 제공하고,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교육내용 및 평가내용을 교과담당교사와 공유함
○ 교과담당교사는 공유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td></tr>
<tr><td>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이 어려울 경우</td><td>○ 장애가 심하여 교과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기능한 태도, 노력, 성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절차(p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과 세부능력 특이사항을 기록할 수 있음
예시) 개별교육에 따라 특이사항 없음</td></tr>
</table>

※ 참고 : 교육부(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

차. 삶과 연계한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안에 환경교육 편성 및 운영

- 지역별 특화된 환경교육 계획 및 실행
-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위기 대처 교육

■ 사회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추진

-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에 대한 선거 참여 방법 및 바람직한 사회참여 활동 교육 계획 및 운영
- 민주시민 교육 지원을 위한 참여와 실천 중심 교육활동 운영

협조 및 유의사항

■ 신규-경력 특수교사 간 특수교육 컨설팅 활성화 노력

- 해당 지역에서 신규-경력 특수교사 간 멘토-멘티 운영
- 특수교육지원단과 행복동행 적극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입(진)학 설명회 개최

- 시기 : 2022. 6 ~ 7월 중
- 대상 : 관내 취(진)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실행

※ 다음년도 취학 진학을 위한 신규 선정·배치 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다음년도부터 지원함을 미리 안내할 것

■ **(학교, 교육지원청)**

- 모든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 탄소 연료 사용 감축 노력

1-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운영

□ 추진목적 및 근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의무)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매 학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 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지원 강화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등)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와의 연계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망 구축 지원

협조 및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

■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대상의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에 관한 연수 내용 포함

■ 관련자료 참고 안내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 북(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 본 예시는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개별화지원팀 협의에 따라 구성

[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 사항 및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이 름		개별화교육지원팀	○학기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팀장(관리자)	
학 년 반	학년 반	팀원(보호자)	
장애 유형(등급)		팀원(진로 담당)	
배치 결과통지서 번호		팀원(일반교사)	
주 소		팀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배치 유형	■ 일반학급 배치	□ 특수학급 배치	
○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학기	20○○.3.1 ~ 20○○.08.○○.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구 분	○학기
치료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3. 현재 학습수행 수준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내용

4.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계획

영 역	○학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계획	

1-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같은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강화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이행 철저

-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 학급 설치나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 2022년 유치원 입학 유아는 처음학교로 입학 시스템 실행 이전 선정·배치 완료할 것

■ 특수교육대상 장애 영아 교육 지원

- 장애영아학급 운영: 전주유화학교 1학급
- 장애영아의 조기발견과 교육 기회 확대 노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가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383, 2020.8.24.)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 의무화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적 등록·관리 필수

■ 순회교육 지원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지원(유치원 담당 인력 18명)
-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결정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월 38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면심의 실시**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장애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담당자 연수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유치원/센터) 연수 실행: 연 3회
-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부모 상담, 초등학교 방문 체험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참고 자료: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길라잡이(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제작 보급)
전북교육청(www.jbe.go.kr)-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실 탑재

협조 및 유의사항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급)

■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의무교육 이행 안내**

- 관내 관계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과의 협력체제로 의무교육 이행 독려
-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 **부모 상담을 통해 취학유예 및 면제 관련 정확한 안내**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 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

1-6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추진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예술교육 강화 계획 구체화
- 특수학교 장애학생 예술체육활동 운영(10개교, 교당 10,000천원 운영비 지원)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참여 권장

■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등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현장학습 등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전라북도 내 장애 예술인(학생, 일반인) 발굴 노력
- 「작은 음악회」 운영을 통한 거점기관 및 도내 장애 예술인의 발표 기회 제공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육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활동 지원(10교): 2022년부터 경상운영비로 지원(30,000천원)
-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 유형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원
- 특수학교 1교 1종목 선정 및 운영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 확대 지원
- 장애학생 e-스포츠.정보화 교사연구회 운영(2개팀)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 찾아가는 생활체육 순회 서비스 지원
- 민간보조사업(1기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으로 운영

다.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운영 활성화

■ **특수학교(급) 특성에 맞는 접근 가능한 종목 선정 운영**

■ **지역별 대회, 온라인 대회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급)
-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특수학교(급)
- 특수학교별 1종목 선정 및 운영

■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운영 적극 참여

< (참고)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스포츠 관련 관계기관 개발 자료 >

①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예술.체육프로그램, 2020, 경남교육청」
②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이론편, 실습편),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③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동영상*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총 5개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91편(초등3~4학년: 29편, 초등4~6학년: 23편, 중등: 39편)
※ (배포)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채널
④ 「통합체육 수업 이렇게, 국립특수교육원, 2021.」

1-7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 추진내용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교육 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의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 특수학교(급) 재난 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행

- 현장 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안전교육 수시 실행

※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 요소 등

※「119 다매체신고 서비스」활용 방법 교육 등 현장성 높은 교육 필요

- 재난 발생 시 장애 유형별 위험 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안전 점검의 실행·결과 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코로나19 대응 안전교육 실행
  - ‣ 마스크 착용 교육,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출입자 명단 관리, 교내 시설물 환기와 정기적 소독 실행,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과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점검

■ 학교 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악취, 소음, 먼지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협조 및 유의사항

■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담당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 **「학교 안전교육 실행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 (교육 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행 결과 보고**

■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추진**

■ **특수학교 알림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정기 점검 실시**

2장 통합교육 여건 조성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행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대학생 교육봉사활동 연계 통합학급 학생 지원 추진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100학급)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특수교사,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 담임제」 운영**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8개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21년 운영교: 익산부송유, 전주인봉초, 전주서신초, 백련초, 이리동북초, 김제중, 안성중

나.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통합교육 지원 여건 조성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6개 기관)**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65학급 예정)
- 유치원 특수학급 중증장애 유아 배치 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우선 배치
- 신·증설 유치원 특수학급 컨설팅과 교재.교구 지원 강화

■ **통합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통합유치원 확대(익산맑은샘유치원, 익산부송유치원 운영 중)

■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 교수 등 협업 강화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전북교육청, 2017)',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8)' 적극 활용,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사례집(전북교육청, 2021.)**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에 필요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지원

■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역할(예시)

• 지원단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 대학교수, 경력 특수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 학부모 등 • 역할: 통합교육관련 컨설팅, 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자료 개발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장, 원장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교장, 원장은 매년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실행**

※ 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교장, 원장과 교사 대상 연수 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나. 통합학급 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집합 연수 및 원격연수 실행**

- 자체 연수 및 위탁 연수(국립특수교육원) 실행
- 전북교육연수원 주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과정 운영(4월 예정)

협조 및 유의사항

■ 일반학교 교장, 원장 대상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안내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연수 실행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 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2-3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순회교육 지원 대상(특수교육법 제25조)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중

■ 운영 방법

- 일반학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지원
-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당교사가 지원
- 교육지원
  -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은 이동 거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대한 지원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재구성, 가족 지원 방법 등 연수 운영

■ **일반학교 순회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통학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출석 권장

■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실행**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소속 학교 담임교사 또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수시 협의
  : 재택 순회교육의 경우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상황을 소속 학교에 수시 통보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이나 담임 역할 수행 지원**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의 학교과정별 지원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9, 재구성)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공통)
교육과정적 지원	협력교수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IEP 수립과 실행 지원 · 담임교사 자문
사회적 관계 지원	또래관계 지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 학생 및 교직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자원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 조기발견 지원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 ·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현황 조사(22년 5월 예정)

■ **특수학교(급)**

-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순회교육 담당교사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상황을 수시 확인

2-4 중도 · 중복장애 학생지원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 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활용

■ 무장애통합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2019~2021년, 36개교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방안 마련

다. [신규]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전주예수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해 치료와 교육활동 병행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2022.7월 개원(예정)으로 2023학년도 특수학급 신설(2학급)과 지원인력 배치 협의

■ 특수학교(급) 중도중복학생 교육 및 의료적 지원(43,000천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로 지원방안 협의 및 반영

※ 참고자료-「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사업 가이드북」,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1.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 특수학교 긍정적행동지원팀 구성·운영

■ 긍정적 행동 지원을 연수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활용 활성화(10개교 완비)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 단위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 지원, 지원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행
- **특수학교** 긍정적행동지원단 구성하여 운영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적극 활용

2-5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추진내용

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 **도내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재배정 사업)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 및 이행 철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기관 및 내용

※ (벌칙조항) 같은법 제49조: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실행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021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 **전북 96.4%**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설치 점검 강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자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실행

[2021년 장애인 학교 급별 편의시설 설치율]

[2021. 12. 31.기준]

연도별 설치율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			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2019년도	학교수	1,268	1,207	1,244	1,168	1,182	1,148	1,165	1,138	1,149	736	754	743	
	비율(%)		95.2	98.1	92.1	93.2	90.5	91.9	89.7	90.6	96.0	98.3	96.9	95.0
2020년도	학교수	1,268	1,222	1,218	1,177	1,212	1,238	1,179	1,180	1,142	725	725	708	
	비율(%)		97.1	97.4	95.3	97.0	98.3	95.0	95.7	93.3	95.0	95.2	94.0	95.6
2021년도	학교수	1,259	1,252	1,238	1,219	1,231	1,250	1,214	1,180	1,145	733	749	734	
	비율(%)		99.4	98.3	96.8	97.8	99.3	96.4	93.7	90.9	95.1	97.1	95.2	96.4

※ 202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북 96.4%('19년 95.0% ⇒ '20년 95.6% ⇒ '21년 96.4%)

※ 2021. 3. 1. 폐교·휴교(초등학교, 유치원), 분교장(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미달) 제외

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단위학교: 3개 의무 항목(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자체 예산 적극 확보

■ 전북교육청: 승강기 12교, 무대경사로 56교, 기타 편의시설 92교 지원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모니터링 실행 및 집행부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예산 확보

- 교장, 원장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강화

3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 · 년제 운영

□ 추진목적 및 근거

-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사례 공유

■ 특수학교의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2022 자유학기·년제 운영 강화 지원

- 2022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022. 2월(1개교당 6,000천원)
- 2022 자유학기·년제 사례나눔회: 2022년 11월 중

나.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 (참고)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자료 >

- ('17) 국어·사회, 수학·과학, 안전생활, 경제생활
- ('18) 직업·자립생활, 예술·체육활동 학생워크북(교사용지도서 포함),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평가 자료집
- ('19) 교과 연계 예술·체육활동 자료집,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20)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우수사례집(3종), 진로탐색 직종 소개 영상(13종)
- ('21) 장애유형별(시각·청각·발달장애) 진로탐색 직종 소개 영상(20종)

※ 자료 탑재 :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자유학기제

다.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 '꿈길'「(www.ggoomgil.go.kr)」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

■ 장애유형별(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 장애)로 다양한 직업분야의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구성하여 장애학생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제공

라.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진로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안전한 체험처 활용

■ '진로체험인증제' 인증기관 확대 및 학교의 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등을 통해 체험의 질적 개선 도모

■ 체험활동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성 제고

협조 및 유의사항

■ 체험학습 전 사전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 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원격 및 집합연수 등 연수 참여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같은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3조(현장실습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 활용
- 자유학년제 운영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강화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2개교)
-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1개교)
-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기)제 운영(2개교)
- 직업교육 거점학교(특수학급) 운영: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실행(3개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원(1개교, 전주선화학교)/ 2022년 경상운영비로 지원
-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운영 지원(9개교)
- 특수학교(급) 교사 진로직업동아리 운영(10팀)

■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국립특수교육원),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평가 기관과 연계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활용을 통해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
-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결과·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졸업이후 취업지원 시스템과 연계 강화[교육부(진로직업교육 이력, 요구 등을 작성하여 서비스 의뢰)_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서비스 분류,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_한국장애인개발원[취업 전 서비스(보호고용, 직업훈련)]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취업률 제고)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직업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100명, 1인 300천원)

나.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운영(2022년 3월 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졸업 후 장애학생의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내에서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교과 Ⅲ ‘직업현장실습’ 과목 적극 활용 권장

■ 산업체, 장애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 직업 경험 확대를 위해 직무 체험 중심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운영

*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 **관계부처(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협약(2018.8월)을 통한 교사 2명 지원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사업*(취업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현장실습 참여 기간 3주 이상, 학교에서 산업체로 직접 현장실습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우수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행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허용(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 확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산업체 등

- 정부(지자체) 및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관계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직업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다양한 현장실습처 발굴(MOU 체결)

라.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2개 수행기관, 12명)**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지자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위탁교육 확대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견학. 체험, 일 배움 프로그램 등 운영

- **교육기관 내 일자리사업: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40명, 연 2회), 특수행정실무사 65명**
- **장애학생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10기관)**
- 전북교육청 단위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에서 일자리 유형과 직업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되,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발·운영

마.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20.3.)**

- 2020년 3월: 공립 특수학교 5교, 5명 배치 완료
- **2022년 3월: 사립 특수학교 1교, 1명 배치(전북혜화학교)**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

- 2022년 2명 연수(명예퇴직 1명 보충으로 2023년 배치, 의무복무기간 내 결원 발생 시 보충을 위해 1명 연수)

※ 연수 이수 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 종별이 전환(특수학교 2급 정교사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되는 것은 아님

*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교원자격증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바.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전주, 군산, 익산)**

-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 설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 학부모용 '진로레터' 적극 활용

사.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지원

■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 촉진 및 진학 후 안정적 적응 능력 향상 지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30명

■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통해 진로체험 및 진로직업 기량 발휘 지원**

- 2022.10월중, 울산광역시교육청(발달장애 영역)

아.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내실화

■ 목적: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기능과 사회적응력을 신장시켜 직업인으로서 잠재력 계발

■ 2022학년도 전공과 운영 현황

순	구분	학교명	학년별 학급 수		비 고
			1년	2년	
1	공립	전주선화학교	3	3	
2	공립	전주은화학교	2	2	
3	공립	군산명화학교	2	2	
4	공립	다솜학교	1	1	
5	공립	한울학교	1	1	
6	사립	동암차돌학교	1	1	
7	사립	전북맹아학교	1	1	이료재활과
			1	1	자립생활과
8	사립	전북푸른학교	1	1	
9	사립	전북혜화학교	1	1	
계	**9교**		**28학급**		*** 학급당 정원 9명**

※ 전공과 교육과정은 2022년 전라북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름

협조 및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2.2~4월)**

■ 성과지표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권장 및 결과(전공과 설치 학교. **'22.11월)**

■ **진로직업교육 교사 동아리 선정·운영('22.4월~)**

■ 성과지표를 활용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결과 제출(**'22.11월**)

■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제출(**'22.11월**)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및 점검 철저

-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안내(**'22.3.~4월**), 운영 컨설팅 구성(**'22.1.~4월 중**)
- 현장실습 운영 점검 실행(**상반기: '22.5~6월, 하반기: '22.10~11월**)
-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2.12월**)

참고 [현장실습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장실습 전	▸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 **(현장실습 산업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교육자료: 국립특수교육원)** ▲('18)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20)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자료 ▲('20) 직업현장실습 콘텐츠 ▲('21) 직업과 자립 콘텐츠 ▲('21)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적극 활용 ▸ **(교원·지원인력)**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수 또는 교육기회 제공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협의회 등에 **인권보호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계기관 직무지도원 교육**에도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넣어 교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학교에 안내**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생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자료 및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중	▸ **(현장지도강화)** **교원**의 **실습 현장 지도**를 **강화(관계기관**과 **연계 등) 인권 침해 사전 예방**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 및 컨설팅 강화**
현장실습 후	▸ **(현장실습 보고회(평가회) 개최)** 학생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시 인권보호체계 확립**

4장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021년 지역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교사로 배치함(교사 87명)
- 전주, 군산, 익산에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정보 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통합교육 지원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 2022. 교육부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발췌함

나.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체계

■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

-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 운영 지침, 예산 및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18개소 120명 전담인력 배치(교사 87, 운영강사 9, 치료사 2, 특수행정실무사 22)

직위	업무	비고
장학관	운영 총괄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기획 운영, 컨설팅, 연수,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등	
장학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등	
주무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재원배분 포함)관리, 치료지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특수교사	발달장애훈련센터 진로체험 운영, 원격수업 등 업무 지원	
특수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업무 지원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위	업무	비고
교육지원과장	센터장, 운영 총괄	
담당 장학사	부센터장, 특수교육지원센터 기획·운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통계, 특수교육정책 관련, 민원 등	
특수교사	순회교육, 진단평가 등 각 업무별 운영	
주무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출관련 업무 등	
운영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특수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 교육지원청은 센터장(교육지원과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 인력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전반적 운영 관리와 특수교원의 순회교육 및 전담 인력의 복무 등을 관리함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설치장소, 배치인력)

2022.1.1.기준

순	센터명	설치장소	배치인력							계
			교사				운영 강사	치료사	특수행정 실무사	
			유	초	중	소계				
1	전북	교육혁신과		1	2	3			1	4
2	전주	전주초등학교 내	3	3	3	9			3	12
3	전주직로직업	전주초등학교 내		1	4	5				5
4	군산	군산교육지원청	2	2	2	6	2	1	1	10
5	군산직로직업	군산교육지원청			4	4				4
6	익산	익산시 인북로 171	2	2	3	7	1		3	11
7	익산직로직업	익산시 인북로 171			4	4				4
8	정읍	정읍교육지원청	1	2	2	5			2	7
9	남원	남원교육지원청	1	2	2	5			2	7
10	김제	김제교육지원청	1	2	2	5	1	1	2	9
11	완주	완주교육지원청	1	2	2	5	1		1	7
12	진안	진안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3	무주	무주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4	장수	장수교육지원청	1	1	2	4			1	5
15	임실	임실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6	순창	순창교육지원청	1	1	2	4			1	5
17	고창	고창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8	부안	부안교육지원청	1	2	2	5			1	6
계		18개소	18	25	44	87	9	2	22	120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전담 인력의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사: 9명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 의함. 단, 순회교육은 특수교원의 고유 업무로 제외)
- 치료사: 2명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치료지원과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등
- 특수행정실무사: 22명 배치, 기관 행정업무 지원 등 (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 의함)

라.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 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체계 확립

-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 별도 운영 조직과 독립된 공간 확보 필요(특수교육원 설립 등)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예,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진단.평가업무)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강화**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구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역할	- 특수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계약제 교원 등 인력채용 관련** - 기타 특수교육 행정 지원 등 (재정교부, 인건비 등) - 관련서비스 행정 업무 (지원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지원 업무 등 행정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지원 - 순회교육 운영 - 특수학급 교수·학습활동지원 - 통합학급 교사 연수 등 통합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운영 - 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치료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지원 운영 등) -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사항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 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정기 연수
- 상·하반기 지역 담당장학사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책공유
- 매월 운영팀장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공유 및 정보 제공
- 지역별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특수교육업무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분리를 위한 방안 모색
-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경력별, 업무별, 직책별 연수 확대 및 정례화(연 4회)
- 업무별 담당자 간 정기 협의회 확대

※ 지역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2021,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참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및 협력 운영체계 구축**

-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 운영체계 구축
  - 상호간의 업무 지원 및 사안 공동 대처를 통한 지원센터 안정화 도모
  - 군지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운영체계 구축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3개소: 전주, 군산, 익산)
  - 일반학교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운영
  - **권역별 지원체계 유지 및 역할 변경**

진로직업거점 권역	거점 역할
① 전주권역: 임실, 장수, 순창, 남원 ② 군산권역: 김제, 부안, 정읍, 고창 ③ 익산권역: 완주, 진안, 무주	**① 진로직업 직무분석 등 운영 사례 공유** **②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안내**

- 역할 :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안내와 교사 대상 컨설팅 연수를 중심 운영

♠ 관련업무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별 운영 지침

1.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순회교육 길라잡이 참고)

■ **지원대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대상자 선정**

- 순회교육대상자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장애 정도,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가급적 학교에 출석하도록 권장**

■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전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순회교육계획(수업내용, 수업일수, 시간표 등 포함)을 수립하여 협력 지원**
-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함(150일 수업일수 확보)
- **원격수업,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과 협력학습, 교과별 학습제, 2인 담임제 등 운영 방법 개선**
- **순회교육을 위한 교재·교구비 반드시 책정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
- **학기별 1회 이상 통합학급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

2.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 **지역별 진단.평가 위원회 구성**

- 특수교사, 치료사 등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
- 수시, 정기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의뢰 학생의 지능, 학습 수준, 행동 특성 등 학생의 교육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직업교육, 순회교육,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여부 등 기재

- 진단·평가 결과 누적관리
- 진단·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에 대한 상담 실행

■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실행**
- 진단·평가 위원회 위원 사전연수
- 검사도구 활용 및 결과 분석, 진단.평가 보고서 및 결과서 작성요령 등 연수 실행(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자체 실행)

3. 통합교육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은 기존의 개별수업지원 중심에서 통합교육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내실화 운영
- 지원내용: 일반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통합학급 교사에게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자료 지원, 문제행동 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 특수교육 관련 상담 기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지역별로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운영**

■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향
-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애인식 개선 사업과 이중·중복 지원 지양

■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동아리 운영 지원**
- 지역 내 통합학급 교사, 관리자 대상 연수 실행
- 통합교육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연구 분위기 조성,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

4. 교수·학습활동지원 활성화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체육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교과지원 등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영역 선택

- 방문 및 외부 프로그램 운영(외부 프로그램 이용 시 지역 내의 관계기관 적극 이용)
- 지역별 학생 수요, 센터 전담 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개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운영
- 특수학교(급)의 계절제 방과후 프로그램과 이중·중복지원 지양
-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주제에 따라 직업교육, 치료, 기초학습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 형제자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통합 지원

    ※ 1회성, 낭비성 체험 중심의 운영은 지양하고, 주제를 설정하여 연계성 있는 운영

■ **교육활동자료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특수교육 활동자료 개발 및 보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자료 공유 및 보급 활성화

5. 일반학교 대상 진로·직업교육지원

■ **일반학교 중·고등학생 대상 직업평가**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직업평가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 권역 대상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체험활동 협력 운영
- 지역 내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실행 후 지원프로그램 영역 선정
- 지역 내 특수학교, 직업거점학교, 산업체와 연계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단위학교 간의 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 전체 운영에 관련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관계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선별검사 지원체계 구축, 유치원 의무교육 홍보
-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실행
- 장애영유아의 성장에 전문적인 지식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연수 실행
- 장애영유아거점센터,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사례 개발 및 공유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가족지원

- 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부모동아리 1개 이상 반드시 운영(지역과 연계 가능 또는 자격증반 운영 적극 권장함)**
- 부모교육의 경우 1회성 연수 지양, 계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조공학 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장애 유형별 거점 센터 이용한 지원
- 지역 관계기관 지원 적극 안내

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필수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 **주요역할**

- 장애학생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현장지원 기능** 수행
-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제 확립
- 매월 1회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일반학교)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 현장지원 실행 (학기별, 분기별 대상 장애학생 상시 현장지원 결과 누적 관리)
-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 상황발생 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관내 관할기관 및 Wee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와 인권보호 조치에 온 힘을 다할 것

- **장애학생 인권피해 실태조사 협력위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1. 운영 모형

■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스템 모형

센터별 진로직업 교육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중심 직업훈련 ➡ 집중적 직업훈련 ➡ 학습중심 현장실습 ➡ 취업지원 사후관리

2. 단계별 세부 내용

■ 센터별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1단계: 진로직업 체험]

- 방법: 학교 내 시설 활용, 장애맞춤체험, 지역사회 체험, 가상 진로직업 체험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진로직업 체험
- 시기: 학생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
-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단계: 직업평가 Ⅰ]

- 방법: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평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학생 진로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을 위한 평가(직업 관계기관과 연계 운영)
- 목표: 학생의 진로성향, 적성. 흥미, 특기 등 발굴
- 시기; 3학년
- 작성: 학생의 진로체험활동 결과, 전문 직업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 학생 및 학부모 요구사항 등을 종합
- 관리: 나이스 '진로체험' 결과란에 종합 기록

[3단계: 직업평가 Ⅱ]

- 방법: 중학교 3학년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담임 및 직업 담당교사가 학교자체 평가 도구를 활용 또는 직업 관계기관과 연계 운영
- 목표: 고등학교 개별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 시기: 고등학교 1학년
- 관리: 나이스 '진로.직업교육계획 수립'란에 기록

[4단계: 직업평가 Ⅲ]

- 방법: 학교의 진로.직업교육 이력과 직업평가 전문기관 공동으로 수행
- 목표: 관계부처 취업지원 연계 시스템으로 서비스 내용 의뢰
- 시기: 고등학교 3학년
- 관리: 나이스 '관계부처 취업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구분	교육부	고용노동부(공단)	보건복지부(개발원)
역할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령기 진로·직업교육 이력과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서비스 의뢰**	직업상담 및 평가, **서비스 분류 및 매칭**,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일자리사업,**취업 전 (보호고용,직업훈련)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교육과정 중심 직업훈련

- 운영 횟수: 센터 프로그램별 계획에 의함
- 지원내용
  - 직업의식 및 태도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 기술
  - 자기관리 능력 및 자기결정 능력 기술
  - 다양한 직종 탐색
  -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등
- 운영 방법
  -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교육과정 및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간 운영
  - 직무수행 능력 부족 학생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면적 훈련 프로그램(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적용,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은 집중적 직업훈련 단계 진행

■ 집중적 직업훈련

- 대상: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운영 횟수: 센터 프로그램별 계획에 의함
- 지원 내용(예시)
  - 서비스반: 바리스타, 세차, 세탁, 진료 지원 등
  - 제조반: 조립·포장, 센터 자체 홍보물품 제조 등
  - 농·축산반: 원예, 축산, 친환경 농업 등
  - 식품가공반: 미숫가루, 과일즙, 구운 소금, 발효 된장, 청국장 제조 등
  - 컴퓨터반: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문서작업, 웹디자인 등
- 운영 방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장애 영역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교육과정 및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간 운영
  -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각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특색있게 운영 가능

■ 학습중심 현장실습

- 대상: 전공과, 고3 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도움서에 의한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실습 운영
    - ☞ 조기 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 ☞ 현장실습 유형(교내직무체험형, 산업체 직무체험형, 장애맞춤기관 직무체험형,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정부주도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운영
  - 정부주도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동계방학을 이용한 취업 권장
- 운영 방법
  - 지역사회 관계기관 연계 맞춤형 현장실습 실행(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일배움, 특수-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직장 윤리,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코로나 19 관련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 순회교육 등 전체적인 지도와 현장지원

■ **취업 지원 및 추수지도**

- 대상: 고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 위탁, 취업 학생 순회 관리
  - 취업 시기는 동계 방학 이용
- 운영 방법
  - 지역 내 장애인 고용 일자리사업 참여 및 활용(공공기관, 지자체 등)
  - 장애학생 취업 기관 정기 방문, 유선(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직장 적응력 수시 파악
  - 장애학생 취업지원서비스(원스톱)를 통한 추수 관리

3. 교사와 학부모 지원 사업

■ **교사 지원**

- 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행
- 진로직업교육 교사 동아리 또는 연구회 운영 지원
- 진로직업교육 관련 자료 배부, 산업체 및 선진지 견학

■ **학부모 지원**

- 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장애학생 진학 및 취업 정보 제공
- 진로직업교육 관련 자료(국립특수교육원 발간 진로레터 등) 배부
- 직업 관계기관과 연계한 연수, 우수 산업체 및 선진지 견학

4.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지원 내용**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장애학생 고용 홍보

■ **운영 방법**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이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내 장애학생 고용 홍보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제출(2022.2.25. 금요일까지)**
- 지역 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등 교원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Wee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순회교육 제공, 진단평가, 상담 및 각종 특수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관리 철저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권지원단 운영 활성화 및 현장 점검 철저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행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4-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 · 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 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추진내용

[전라북도교육청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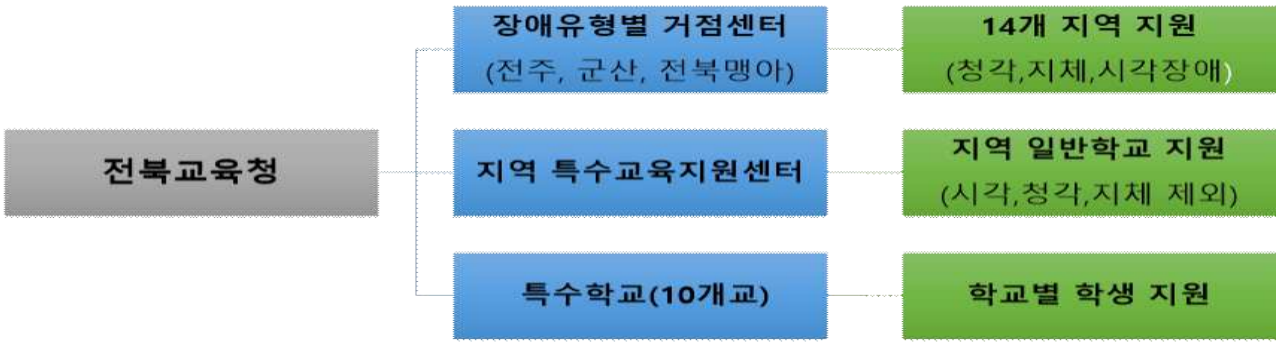

■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 시각장애학생 대체 교과서(확대·점자·음성 교과서) 보급 지원(15,000천원)

- 장애 유형별 거점센터를 통한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대여
  • 지원 범위 및 영역: 4개 영역, 14개 시 군 대상(45,100천원)

센터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유지 관리비 지원
  · 지역별 수요에 따른 구입 및 대여 지원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22년부터 경상운영비로 지원(10개교, 100,000천원)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적극 활용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② 보조공학기기 대여 후 사용점검 및 관리 철저

③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 철저

④ 보호자, 교사 대상 보조공학기기 관련 연수 지원

■ **특수학교(급)**

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지원

② 보조공학기기 대여 후 사용점검 및 관리 철저

4-3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추진목적 및 근거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초 · 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추진내용

가. 학생 대상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수업 실시 확대

- 유치원: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유튜브 탑재
- 초등: (KBS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중등: (KBS TV) 장애이해드리마,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영한 유·초·중·고등학교 연간교육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회 프로그램 참여,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강사 강의,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나.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전직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전직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근무자 중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립학교와 취합기관(전북교육청)은 관련자료 3년 보관

■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14개 교육지원청)

■ 장애 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행

■ 각급 학교·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행(「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 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행

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 학생과 일반인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홍보 콘텐츠 활용

■ 장애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급)**
✔ 장애인식 개선 사업 계획 수립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철저
✔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대상 연 1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행	✔ 학생 대상 연 2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행
✔ 지역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행	✔ 교직원 대상 연 1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행

4-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자기 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추진내용

가. 장애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내실화 추진

- 인권종합대책 추진내용 점검(연 1회, 10월 중)

핵심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 부 추 진 계 획
Ⅰ.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	- 온라인 인권 보호 지원센터 적극 활용 -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연 1회)
	□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 특수학교 긍정적행동지원 팀 운영 -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Ⅱ.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인권침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특별현장지원 철저(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 인권보호자원 지도시스템 활용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 정기현장지원(특수학교 연 2회, 특수교육대상배치교 연 1회) - 더봄학생지원방법 연수 실행 등을 통한 강화 - 전담인력 연수와 모니터링회의 실행
Ⅲ. 인권보호 여건개선	□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노력(2교 2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배치 확대(87명)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확대 노력
	□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특수학급 신·증설(22년 18학급) - 특수학급 법정 정원 준수 - 교육 소외지역 중고전공과 과정 특수학교 설립 노력 -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 발생 예방 철저 -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개선비 지원

핵심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 부 추 진 계 획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 인권지원단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강화
Ⅳ. 인권보호 역량강화	□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 교장(감), 원장(감), 교사, 학생 장애인권관련 연수 - 특수학교 교장 연 5시간 인권 관련 연수 이수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 연수, 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 -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직무교육(교육청), 장애이해 및 인권 연 2회(학교) 실행
Ⅴ.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 정다운학교 확대 운영(8개교)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거점센터 운영(3개센터) -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100개 학급) -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연중)
	□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장애이해교육 운영 -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칙 신설 노력 (연수, 컨설팅, 현장 지원)
	□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 모든 교육기관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 장애인식개선 홍보 다양화(홈페이지, 전광판 활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 운영	- 연 1회 교육부 주관 실행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별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설치·운영(22년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참고)

○ 인권지원단 구성: 3월 초(필수인원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
○ 협의회 개최: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현장 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행
○ 지원내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지원과 연수, 더봄학생 선정·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
○ 결과 보고: 현장 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취합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보고)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진술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행**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 보호 역량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행**

■ **장애학생 성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보건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 **방과 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담당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침해 실태조사 협조위원 1명씩 선정지원

라.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 운영**

- 교사 직무연수 운영: 2022.4월 중 연수대상자 선정, 8월중 연수 운영 예정
- 기관별(특수학교, 특수교육지센터)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장애학생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1개소,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 행동중재 전문가단 운영을 통한 지원
- 일반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컨설팅 및 운영 지원
-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구회 운영(2개팀)
- 교사, 보호자, 대상연수
- 심리적 소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부적절한 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 중재 실행

협조 및 유의사항

■ **지역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장애인권 침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파악 시에 특별모니터링 실행 및 즉시 보고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행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 인권지원단 업무와 행동중재지원 업무 별도 운영 권장

■ **특수학교(급)**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 인지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수사기관, 교육청)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4-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 · 평가 체계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초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병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15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전북교육청 1, 지역교육청 14) 운영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점검, 영역에 맞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담당 간사는 특수교육담당장학사로 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참고(전북교육청)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 · 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팀 구성
  - 진단·평가 팀장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로 함
  - 팀원은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등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함
- 사전연수: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실행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 진단·평가 결과 처리 시 치료지원 영역 표기 여부 확인

※ 기타 세부 사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참고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학습 부진 학생이 학습장애학생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라.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 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

■ **과 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국가인권위원회 원고(2015. 8. 19.)

-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지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지난 자에 대해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취소**

- 선정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단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저

※ 기타 세부 사항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협조 및 유의사항

■ 지역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대한 연수 실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숙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등학교 취학 독려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실행
-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특수교육 기반 조성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협력체제 구축

■ 학부모 마을 교사 활성화(방과 후 마을 학교,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 지역별 장애인권 및 이해 교육 학부모 강사단 인력풀 지원

■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협력 장애학생 취업 서비스 강화
- 지역 관계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 직무실습 체험과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나. 가족 지원 강화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

- 지역별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 다양한 특수교육지원 교육 실행
- 학부모 성장을 위한 교육 운영과 지원

■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 참여 보장

-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한 참여
- 지역별 학부모회와 동아리 활성화(14개 교육지원청별 운영지원)
- 가족 단위 교육지원 적극 권장: 방학 중 프로그램, 가족 캠프, 가족합창단 등

5장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추진내용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 학생
-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는 지원 불가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불가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음악, 미술,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방법
-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2022년 2명 운영
  (※ 군산, 김제지역 운영 중, 한시 운영사업으로 추후 종료 예정임)

☞ 위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운영시간은 방과 후 시간을 원칙으로 함**
-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비영리기관일 경우 가능함)
- **치료지원 관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영역 안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1		2		3		4
센터/교육지원청		【학부모 의견수렴】		센터/학교		센터/학교
진단・평가를 통한 지원영역 결정	➡	- 치료지원 영역 - 치료지원 방법 · 치료지원 제공기관 · 치료사 - 기타 지원 사항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기재	➡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치료지원 과정 및 평가내용 공유

* 치료지원 영역(이미 결정된 영역 중에서 선택), 기관, 시간 등은 학부모 의견수렴

■ 치료지원 전자카드「꿈 활짝 카드」사용 안내 (http://jbe.nhdream.co.kr/)

① 카드 신청 및 (재) 발급
- 담당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는 해당 학교)

② 이용 방법
- 매월 1일 지원액이 포인트로 생성
- 매월 말일 월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③ 이용장소
-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드림스 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가맹점 조회 가능)

협조 및 유의사항

■ **치료지원 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
-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
-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내용 정비(연 2회, 3월, 9월)**

■ **미인증 사설 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서류 검토**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모든기관 연1회, 특별점검 실시)**

※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관리: 교육지원청 / 특수학교 학생 관리: 특수학교
(2022년 변경내용: 고등학교 관리 및 지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변경)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추진내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 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제외대상: 취학유예자,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 대상자 등

협조 및 유의사항

■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5-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공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반드시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 **운영 내용**

- 사립: 1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함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취학 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15일 미만 출결 할 때 날짜로 계산함)

■ 유아 1인당 학비가 사립 월 38만1천원을 초과할 때도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 공립 특수학교(급)와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임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같은 법 제26조(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특수학교: 교내 방과 후 과정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과 일반 방과 후 과정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1개 프로그램당(4명 이상 기준, 유치원은 3명 이상) 월 60만원 지원**
  ※ 단,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참여 학생이 1~3명(유치원은 1~2명)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유치원 특수학교 중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학급은 학생당 운영비 5만원 이내 지원

나.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급)

■ 지원기준: 방과 후 과정 3명 이상 운영 학급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임
-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방과 후 지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 관리 철저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보건복지부) 안내

♠ 관련 업무계획 ♠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원**되므로 선정.배치 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실행

- 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방과 후 학교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추진내용

가.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건강장애와 보호필요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운영과 지원

- 운영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한누리 병원학교** (http://www.jb-hospitalschool.kr)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http://hospital.s4u.kr)
- 신청 절차: 소속 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
  → 병원학교에서 입금 확인서를 소속 학교로 통보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도모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나. 원격수업 수강 학생지원

■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의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에서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운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꿈 사랑 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소속교 담임, 특수교사, 원격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초·중등 교육과정 지원

-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과 화상수업 지원, 생활 관련 상담 지원 등

- 초등학교(1일 1시간 이상 수강), 중·고등학교(1일 2시간 수강) 수업 참여

■ 원격수업 수강 관련 절차

- 수강 의뢰: 소속 학교장 → 전북교육청 → 운영기관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 명단 통보(운영기관→전북교육청→소속 학교)
- 행정 사항 통보: 운영기관 → 전북교육청 → 소속 학교

■ 학적과 성적처리 지침 내용

- (학적 또는 출결)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출결은 위탁 교육기관의 원격 수업 참여일 수를 기본으로 함
  · 학교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다.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담임(담당)교사 교육 강화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 담임교사나 업무담당자 연수 연 1회 이상 실행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준수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연수 강화

라.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건강장애 선정은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하였으면 선(先) 교육 지원 가능**

마.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 또는 학생 대상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안정적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속 학교 교원, 교우들을 포함하여 운영 필요

- 심리·상담 지원, 담임 또는 담당 교원 연수, 보호자 교육, 다양한 체험활동 등

협조 및 유의사항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 전달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행하도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 정신질환 학생은 건강장애 선정과 원격수업 수강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내

■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원격수업 수강 해지 절차 안내(1/3 기준 유예기간 부여)**

※ 건강장애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용어의 정의
건강장애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보호필요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병원학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교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
원격수업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이나 보호필요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강의나 탑재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

5-6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같은 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리

■ **배치기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역할**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

1)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중복 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 지도에 대해 지원함

□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해당 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로 한다.

※ 국립대 부설 학교는 국고에서 지원

<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 담당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주요업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지원역할 담당

※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 지도.평가.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022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발췌

2)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에 따름

업무	복무 분야	주 임무	부수 임무	복무 형태	복무 기관 (근무지)
교육 문화	장애 학생 활동 지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 지도·식사 등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부수 임무 수행 조건** • 공익목적 수행 범위 •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 임무 예시** •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 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 풍속사범 단속	주간	교육청 및 초·중·고 (사립 포함)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5조(복무 분야별 임무) 참조

-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직무교육(교육지원청),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연 2회(학교) 실행

나.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리

■ 특수학교 기숙사에 배치된 학생들의 기숙사 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지도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근무: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
- 근무 일수: 기존 연봉 체계의 일급 단가 및 연봉기준일 수(290일)는 폐지되고 월급 체제로 전환(2014.1.1.)됨

■ 근로시간 준수 철저

-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 1박 2일 이상 숙박형 체험학습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동반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학생지원 업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특수교육지도사의 방과후학교, 돌봄 지원이 고유 업무이므로 방학 중에 실행되는 방과후학교 운영 시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실행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해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Ⅵ 2022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 사항

1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행사

1) 2022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ㅇ 일　　시 : 2022. 9. 5.~7. (예정)

ㅇ 장　　소 : 미정

ㅇ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ㅇ 후　　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ㅇ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약 1,500명

2) 2022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 기간 : 2022. 4.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법 :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3)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기간 : 2022. 6.

○ 내용 :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법 :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4) 2022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ㅇ 일　　시 : 2022. 5.

ㅇ 장　　소 : 경북 구미시

ㅇ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주　　관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ㅇ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ㅇ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ㅇ 참석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교원 등

5) 2022년 진로드림 페스티벌

○ 일　　시 : 2022. 10. 27. (예정)

○ 장　　소 : 미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상영역 : 발달장애

○ 참가대상 : 전국 발달장애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

6) 2022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실태조사 실시

ㅇ 대　　상 : 특수교육대상자(초4~전공과), 학부모, 교원

ㅇ 기　　간 : 2022. 5.~8. (예정)

ㅇ 내　　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관한 사항

ㅇ 방　　법 :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ㅇ 주관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ㅇ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전라북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월	주	주요 행사	날짜(예정)	운영담당
1월	3	• 특수교육지도사 역량강화 연수(1차)	1.17(월)-1.21.(금)	통합교육
2월	1	• 2022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2.4.(금)	특수교육팀
	3	• 특수교육지도사 역량강화 연수(2차)	2.14(월)-2.18.(금)	통합교육
		• 2022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지원 안내	2.10.(목)	진로직업
		• 직업 관계기관 협의회(1차)	2.11.(금)	진로직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담당자 회의	2.18.(금)	특수교육지원센터
	4	• ’22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역 협의체 구성	2.28.(금)	진로직업
3월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별 안내 연수	3.14.(월)~18.(금)	특수교육지원센터
4월	1	• 특수행정실무사 배치기관 현장지원	4.4.(월)~4.29.(금)	진로직업
		•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교장 연수	4.5.(화)	통합교육
	2	•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교감 연수	4.12.(화)	통합교육
		• 신규 특수교사 연수(유치원)	4.14.(목)	통합교육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4.15.(금)	교육과정
		•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역 협의체 협의(1차)	4.15.(금)	진로직업
	3	• 장애이해교육 주간 운영	4.18.(월)~22.(금)	특수교육팀
		• 신규 특수교사 연수(초등)	4.19.(화)	통합교육
		• 특수교육지원단 협의회	4.22.(금)	통합교육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운영(상반기)	4.18.(월)~7.15.(금)	진로직업
		• 직업 관계기관 협의회(2차)	4.22.(금)	진로직업
	4	• 신규 특수교사 연수(중등)	4.26.(화)	통합교육
	5	• 특수교육 진로직업 담당교사 연수(1차)	4.29.(금)	진로직업
		• 특수교육지원단과 행복동행 만남의 날	4.29.(금)	통합교육
5월	1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연수	5.3.(화)~ 4.(수)	특수교육지원센터
	2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5월~8월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3	•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현장지원	5.16.(월)~31.(화)	진로직업
	4	• 전북e페스티벌 대회 운영	5.16.(월)~31.(화)	특수교육지원센터
6월	1	•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교 협의회		특수교육지원센터
	3	• 학습중심 현장실습 모니터링(1차)	6.13.(월)~30.(목)	
	4	• 특수교육지원단 워크숍	6.24.(금)~25.(토)	통합교육
		• 직업 관계기관 협의회(3차)	6.24.(금)	진로직업

7월	1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7.8.(금)	교육과정
	3	•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역 협의체 협의(2차)	7.22.(금)	진로직업
	4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담당교사 협의회(1차)	7.29.(금)	진로직업
8월	2	• 특수교육지도사 워크숍	8.8.(월) ~ 8.9(화)	통합교육
	3	• 특수교육지원지원센터 역량강화 연수	8.17.(수) ~ 8.19(금)	특수교육지원센터
	4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담당교사 협의회(2차)	8.26.(금)	진로직업
9월	1	•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참여	9.5.(월)~7.(수)	특수교육지원센터
		• '23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요강 승인 안내	9.7.(수)	
	2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9.15.(목)~16.(금)	교육과정
		• 신규 특수교사 연수(유치원)	9.16.(금)	통합교육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운영(하반기)	9.13.(화)~12.9.(금)	진로직업
	3	• '23 배치 특수행정실무사 배정 계획 안내	9.19.(월)	진로직업
		• 신규 특수교사 연수(초등)	9.23.(금)	통합교육
	5	• 신규 특수교사 연수(중등)	9.30.(금)	통합교육
10월	2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10.14.(금)	교육과정
		•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역 협의체 협의(3차)	10.14.(금)	진로직업
	3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합동 모니터링	10.18.(화)~19.(수)	진로직업
	4	•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10.27.(목)	진로직업교육
		• 특수교육 진로직업 담당교사 연수(3차)	10.28.(금)	
		• 직업 관계기관 협의회(4차)	10.31.(월)	
11월	1	• 특수교육관련 동아리 사례 나눔	11.3.(목)~4.(금)	특수교육팀
		• 특수교육지원단 연수	11.4.(금)	통합교육
	2	• 특수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지원(2차)	11.7.(월)~30.(수)	진로직업
	3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11.18.(금)	교육과정
	4	• '23 배치 특수행정실무사 배정 기관 확정 안내	11.21.(월)	진로직업
		• 특수교육지원단과 행복동행 성과나눔회	11.25.(금)	통합교육
	5	•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평가	12.1.(목)~2.(화)	특수교육지원센터
12월	1	•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역 협의체 협의(4차)	12.8.(목)	진로직업
		•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성과나눔회	12.9.(금)	통합교육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12.9.(금)	교육과정
		• 2022 특수교육 진로직업 운영 평가	12.9.(금)	직로직업
	3	• 특수교육 작은 음악회 및 하루장터	12.12.(월)~15.(목)	진로직업
	4	• 직업 관계기관 협의회(5차)	12.19.(월)	진로직업
	5	• 22년 재배정, 집행 결과 제출	12.23.(금)	특수교육팀

특수교육 관련 법령 안내

□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 http://jbe.go.kr/special

(전라북전북교육청-교육정보-특수교육-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 법제처: http://www.law.go.kr/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5.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6. 전라북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등의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발행일 / 2022.1.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주소 / 우)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